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미심위 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위촉
전까지 직무 수행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34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미심위 위원 임기만료 후 후임자 임명·위촉 전까지 직무 수행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12.

다. 회 부 일 : 2026.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미심위 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위촉 전까지 직무 수행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 설치 등) ① ~ ⑥ (생 략) <u><신 설></u> ⑦ (생 략)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 료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 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또는 위촉되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라 함)를 두고 있음.
- 방미심위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함)은 9명으로, 각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임.¹⁾
- 방미심위(舊 방심위²⁾)는 지난 10년간(2016~2025년) 연평균 약 781건의 방송심의, 220,337건의 통신심의, 41,459건의 디지털성범죄심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방송미디어통신 매체 및 플랫폼 다양화에 따라 심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런데,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방송심의 공백으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저해나 통신심의, 디지털성범죄심의 공백으로 인해 불법정보가 차단되지 못하고 계속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위촉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2025년 10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음.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방미심위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이 정하는 임기제와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심의위원의 직무 수행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1회로 제한(최대 6년)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후임자 임명·위촉이 지연될 경우 전임 심의위원이 6년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해 임기제와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미심위 미구성에 따른 심의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중대하므로 임기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임.
- 방미심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7~'26년) 사임, 해촉, 임기

만료 후 후임 위원 미위촉에 따라 심의위원 9명 중 5명 이상 공석이 발생함으로써 의사정족수(5명)³⁾가 충족되지 못한 기간이 총 962일(약 2년 7개월)에 달함.

<최근 10년간 방(미)심위 위원 공석 기간 현황>

기간	공석 수	사유
2017.6.13.~2018.1.29.	9명	위원 임기 만료
2019.8.8.~2019.11.7.	1명	위원 별세
2020.6.28.~2020.10.22.	1명	위원 사임
2021.1.29.~2021.7.22.	9명	위원 임기 만료
2021.7.23.~2021.8.5.	3명	미위촉
2021.12.17.~2022.4.12.	1명	위원 사임
2023.8.18.~2023.9.7.	1명	위원 해촉
2023.9.8.~2024.1.16.	2명	위원 해촉 및 미위촉
2024.1.17.~2024.1.22.	4명	위원 해촉 및 미위촉
2024.7.23.~2024.8.5.	4명	미위촉
2024.8.6.~2025.6.2.	6명	위원 임기 만료 및 미위촉
2025.6.3.~2025.9.30.	7명	위원 사임
2025.10.1.~2025.12.28.	9명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에 따른 임기 종료
2025.12.29.~2026.2.12.	6명	미위촉
2026.2.13.~2026.3.10.	1명	미위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2026.6.)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0.1. 폐지)

제22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0.1. 제정)

제23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히, 2024년 8월 이후로는 심의위원 과반이 공석인 상태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심의위원이 임명·위촉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임명된 2026년 4월까지 총 174,678건⁴⁾의 방송통신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비록 방미심위가 접수된 심의 건에 대하여 자체 처리를 통한 심의 대기 안전 최소화, 적체 안전 사전 검토,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유도 등 심의·의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1년 9개월 간 방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시정요구, 불법정보의 차단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는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미심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특히 신속한 차단이 필요한 명예훼손,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을 방치하는 중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 것임.
- 따라서 그간 방미심위 운영 실태와 비가역적인 정보 유통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한 심의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규 심의위원 위촉·임명 전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임기 만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임기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충

4) 방송심의 9,720건, 통신심의 142,997건, 디지털성범죄심의 21,961건

분히 인정된다고 보임.

- 셋째, 유사한 형태의 타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방미심위에 전임자 직무 계속 수행 제도를 둘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 8개⁵⁾ 중 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⁶⁾가 유일하고, 그 외 기간은 후임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헌법상 독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대법관⁷⁾, 헌법재판소 재판관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⁹⁾, 감사원장·감사위원¹⁰⁾ 등

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상 대통령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상 국무총리 소속)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주요 헌법기관 역시 정치적 대립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방미심위의 경우 ①위원 정원 중 2/3 인 6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후임자 추천이 지연될 수 있고,¹¹⁾ ②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른 심의나 불법 정보 차단 등 제재가 중단되며, 특히 마약·디지털성범죄 등 유통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 공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따라서 다른 기관의 사례 및 임기제 원칙과 더불어, 방미심위 업무의 특수성과 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와 관련하여, 전임자의 직무 계속 수행 제도를 현재 재직 중인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 시부터 적용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이 임명·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임명·위촉되어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인 심의위원 9명은 임

10) 「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①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1) 타 기관의 경우 대통령, 국회, 대법원, 관련 단체 등으로 추천·지명권자가 다양하거나 위원장이 임명제청한다는 점에서 후임자 임명·위촉 절차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비교적 낮은 편임.

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 임명·위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어 심의 공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제도를 현재 재직 중인 심의위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최대 6년의 임기를 전제로 임명·위촉된 기존 심의위원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의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동의)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심의위원 임기 만료 후 방미심위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입법 방안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문 의 처
02)6788-5226